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가단50535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성창재, 홍정표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1. 1. 29.

판 결 선 고 2021. 4. 16.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1,382,616원 및 그 중 99,836,205원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2020. 5. 12.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B는 피고 A에게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9. 10. 23. 접수 제101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3.경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C은행(강릉지점)에 부담할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연 10%이다)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조치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A은 2017. 4. 14. 위 약정을 이용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9. 12. 20. 보증사고(폐업)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20. 3. 24. 99,898,94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20. 3. 24. 대위변제금 중 62,740원을 회수하였고, 위 금액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은 17원이다. 또한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조치비용 중 회수되고 남은 금액은 1,546,394원이다.

라. 한편 피고 A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22. 피고 B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10. 23. 피고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합계 101,382,616원{= 대위변제금 99,836,205원(= 99,898,945원 - 회수금 62,740원) + 확정 지연손해금 17원 + 비용 1,546,394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9,836,20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3.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0. 5. 12.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에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결국 원고가 2020. 3. 24. 피고 A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2)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원도 정선군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피고 A은 적극재산으로는 유일하게 과세표준 합계 139,861,81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앞서 본 C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약 99,129,742원), 피고 B에 대한 차용금 채무(3억 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B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1) 피고 B는 피고 A과 친인척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3억 원에 이르는 돈을 무이자로 선뜻 빌려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 2) 피고 B는 피고 A이 자신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수개월간 그 변제를 독촉하다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 3) 뿐만 아니라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A은 2019. 2.말경 이미 자금 마련을 위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부라도 매도하려 하였으나 이를 매수할 사람이 없었고, 피고 B는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 A으로부터 듣고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위와 같은 상황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까지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가 4억 5,0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고 A의 책임재산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B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B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경

별지

목록

1. 강원 정선군 D 임야 16,433㎡

2. 강원 정선군 E 대 621㎡

3. 강원 정선군 F 대 550㎡

4. 강원 정선군 F, E G동

[도로명주소] 강원 정선군 H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65.14㎡, 2층 59.42㎡

5. 강원 정선군 F, E I동

[도로명주소] 강원 정선군 H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지붕 단층 창고시설 10.8㎡. 끝.